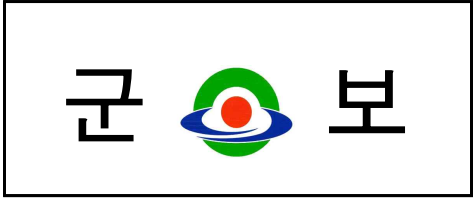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604호 2025. 4. 10.(목)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 별방지구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실시계획 인가·공고(예천군 공고 제2025-630호)
- 예천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5-636호)

회 람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71)

별방지구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실시계획 인가·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에 따라 「별방지구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0일

예 천 군 수

1. 사업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재해복구사업

나. 명 칭 : 별방지구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예천군수

나. 주 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가. 위 치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별방리 일원

나. 면 적 : 60,600㎡

다. 규 모 : 사방댐 9개소, 계류보전 L=154m, 세천 2개소 L=1.48km

마을기반시설(A=13,157㎡) 조성, 부대공 1식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사업 착수일 : 2024. 03. 01

나. 사업 준공예정일 : 2025. 12. 31.

5.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참조

6.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 열람

가. 장 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안전재난과

나. 기 간 : 2025. 4. 10. ~ 2025. 4. 25. (15일간)

7. 기타사항 : 기타 문의 사항은 예천군청 안전재난과(☎054-650-65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6. 14.>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예천 군)	당초 지번	편입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자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주 소	성 명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감천면 별방리	산46	산46-5	임	108,305	81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97 정든마을 40*-180*	홍*창	한국전 력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지상권	
2	감천면 별방리	산56	산56-1	임	65,455	154	서울 송파구 잠실동10*-1 우성아파트*동100*호	정*우				
3	감천면 별방리	산57	산57-1	임	40,066	839	서울 서대문구 포방터1*길 3* 10*동 70*호(홍은동 극동아파트)	임*수	서초 세무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	압류	
4	감천면 별방리	산58	산58-1 산58-2	임	174,546	4,078 347	안성시 서운면 인리 24*	전*례				
5	감천면 별방리	산103	산103	구	75	71	농림수산부	국				
6	감천면 별방리	581	581	구	21,382	13,898	농림수산부	국				
7	감천면 별방리	8	8	답	522	522	예천군 감천면 별방리 29*	최*하				
8	감천면 별방리	산46-3	산46-6 산46-7	임	27,600	307 141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 6*-*	홍*수				
9	감천면 별방리	7	7	답	304	304	예천군 감천면 별방리29*	최*하				
10	감천면 별방리	6	6	답	314	314	예천군 감천면 별방리29*	최*하				
11	감천면 별방리	152	152	답	655	655	예천군 감천면 별방리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6*0 현대청림타운 10*-80*	신*식 신*식				공유 자
12	감천면 별방리	150	150-1	전	2,674	198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옥동로15*번길 3*	박*도	한국전 력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지상권	
13	감천면 별방리	149	149	답	235	235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옥동로15*번길 3*	박*도	한국전 력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지상권	
14	감천면 별방리	산34	산34-1	임	28,959	394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로 10*-2*(성정동)	송*섭	한국전 력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55(빛가람동)	지상권	
15	감천면	산33	산33-4	임	12,266	843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김*숙				

	별방리						효자로 17*					
16	감천면 별방리	5-1	5-3 5-4	과	10,270	401 1,282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효자로 17*	김*숙	한국전 력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55(빛가람동)	지상권	
17	감천면 별방리	3-1	3-4	전	3,580	126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우계로 8*-1*	유*순	한국전 력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55(빛가람동)	지상권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별방2길 6*-4*	유*진	한국전 력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55(빛가람동)	지상권	공유 자
18	감천면 별방리	580	580	구	1,002	67	농림수산부	국				
19	감천면 별방리	산32	산32	임	2,979	2,979	예천군 감천면 별방리 126-*	신*식				
20	감천면 별방리	산98	산98	구	1,058	1,058	농림수산부	국				
21	감천면 별방리	산32-1	산32-3	임	1,487	160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별방2길 3*	신*식				
22	감천면 별방리	산33-3	산33-6	임	3,025	93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효자로 17*	김*숙	한국전 력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55(빛가람동)	지상권	
23	감천면 별방리	산99	산99	도	165	12	기획재정부	국				
24	감천면 별방리	172	172-1	답	4,192	295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늘푸른*길 4* 10*동 130*호(두정동 극동늘푸른아파트)	송*섭				
25	예천군 감천면 별방리	585	585	도	655	37	국토교통부	국				
26	감천면 별방리	170	170-1	전	1,868	38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산길 *	홍*화				
27	감천면 별방리	168	168-1	전	526	32	예천군 감천면 별방리 12*-*	신*식				
28	감천면 별방리	산102	산102	구	496	64	농림수산부	국				
29	감천면 별방리	147	147	전	744	744	예천군 감천면 별방리 30*	유*남				
30	감천면 별방리	167	167	전	245	245	예천군 감천면 별방리 12*-*	신*식				
31	감천면 별방리	586	586	도	4,403	1,054	국토교통부	국				
32	감천면 별방리	166	166	답	1,749	1,749	예천군 감천면 별방리 12*-*	신*식				
33	감천면 별방리	587	587	도	1,349	330	국토교통부	국				
34	감천면 별방리	130	130-1	전	222	63	영주군 영주읍 영주리 32*-*	김*한				

35	감천면 별방리	128	128-1	답	714	1,49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범로5*길 15 10*동 80*호(범물동 현대청림타운)	신*식				
36	감천면 별방리	129	129	답	615	615	예천군 감천면 별방리 12*-*	신*식				
37	감천면 별방리	123	123	답	60	60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별방2길 3*	신*식				
38	감천면 별방리	125-1	125-3	대	110	45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별방2길 3*	트**응옥 웬				
39	감천면 별방리	588	588	도	1,448	871	국토교통부	국				
40	감천면 별방리	125	125-3	대	551	45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별방2길 3*	신*식				
41	감천면 별방리	124	124-1	대	426	218	예천군 감천면 별방리 12*	신*식				
42	감천면 별방리	121-2	121-4	답	679	2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 29 71*동 70*호 (천천동 비단마을현대성우.우방 아파트)	김*중				
43	감천면 별방리	121	121-3	대	637	1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 29 71*동 70*호 (천천동 비단마을현대성우.우방 아파트)	김*중				
44	감천면 별방리	313-3	313-6	대	480	224	예천군 감천면 별방리 29*	최*근				
45	감천면 별방리	315	315-2	과	1,253	195	예천군 감천면 별방리 30*	유*홍				
46	감천면 별방리	313-2	313-5	대	494	177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별방2길 2*	홍*화				
47	감천면 별방리	312	312-1	답	93	67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회현로 58*	김*석				
48	감천면 별방리	306	306-1	대	215	86	예천군 감천면 별방리 30*	유*호				
49	감천면 별방리	304	304-1	답	1,233	327	예천군 감천면 별방리 30*	우*주				
50	감천면 별방리	318	318-1	과	380	154	예천군 감천면 별방리 30*	유*홍				
51	감천면 별방리	303	303	답	96	96	예천군 감천면 별방리 31*	홍*수				
52	감천면 별방리	302	302-1	답	625	192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별방2길 1*	윤*식				
53	감천면 별방리	319	319	대	403	403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별방2길 1*	윤*순				
54	감천면 별방리	293-1	293-3	대	157	45	예천군 감천면 별방리 12*	신*무				

55	감천면 별방리	319-1	319-1	대	463	165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별방리 29*	김*태				
56	감천면 별방리	293	293-2	대	560	319	예천군 감천면 별방리 29*	김*수				
57	감천면 별방리	608	608	도	14	14	기획재정부	국				
58	감천면 별방리	319-2	319-6	대	514	18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별방리 31*-2	권*량				
59	감천면 별방리	291	291-3	전	1,338	304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별방리 31*	이*희				
60	감천면 별방리	291-1	291-4	창	105	4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별방리 28*-5	방*영농조 합법인				
61	감천면 별방리	288-5	288-7	창	410	29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별방리28*-5	방*영농조 합법인	양*일	창원시 신월동54-15	가압류	
62	감천면 별방리	288-6	288-6	대	122	122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별방리28*-5	방*영농조 합법인				
63	감천면 별방리	283	283-1	대	823	53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1*-*. *층 -*01	유*식				
64	감천면 별방리	284-1	284-3	대	608	198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1*-*. *층 -*01	유*식				
65	감천면 별방리	284-2	284-2	도	198	135	예천군	공				
66	감천면 별방리	285-1	285-1	도	30	30	예천군	공				
67	감천면 별방리	590	590	도	18,129	184	국토교통부	국				
68	감천면 별방리	288-4	288-4	도	523	16	예천군	공				
69	감천면 별방리	288-2	288-2	도	169	95	국토교통부	국				
70	감천면 별방리	611	611	구	417	13	농림수산부	국				
71	감천면 별방리	607	607	도	833	117	국토교통부	국				
72	감천면 별방리	286-2	286-2	대	224	224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소백로 56*	우*주				
73	감천면 별방리	286-5	286-5	전	442	51	예천군	공				
74	감천면 별방리	599	599	천	43,086	39	국토교통부	국				
75	감천면 별방리	285-2	285-2	대	139	139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소백로 56*	우*주				
76	감천면 별방리	367	367	과	1,924	1,92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87 4**동	박*원				

							120*호(죽전동 꽃메마을현대홈타운)					
77	감천면 별방리	384-1	384-1	도	10	10	예천군 감천면 별방리 39*-*	권*경				
78	감천면 별방리	385-1	385-1	도	23	23	예천군 감천면 별방리 39*-*	권*경				
79	감천면 별방리	386-1	386-1	도	7	7	예천군 감천면 별방리 39*-*	권*경				
80	감천면 별방리	387	387	과	527	527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동 660-*	박*근				
81	감천면 별방리	280	280	과	1,391	1,391	경상북도 영주시 신재로5*번길 1* (가흥동)	박*근				
82	감천면 별방리	389	389	답	4,738	4,738	예천군 감천면 별방동 11*	문*선				
							서울 송파구 석촌동 12-2 *층50*호	유*식				공유 자
83	감천면 별방리	390-1	390-1	답	5,869	5,869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별방리 29*	김*태				
84	감천면 별방리	393-2	393-2	도	582	19	예천군	공				
85	감천면 별방리	12	12	답	1,144	1,144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봉덕로 5* 10*동 10*호 (주공아파트)	박*식				
86	감천면 별방리	11	11	답	724	724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봉덕로 5* 10*동 10*호 (주공아파트)	박*식				
87	감천면 별방리	153	153	전	1,121	1,121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옥동로15*번길 3*	박*도				
88	감천면 별방리	148	148	답	549	549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옥동로15*번길 3*	박*도				

예천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소식지 발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0일

예 천



1. 조례명 : 예천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군정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홍보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군정 참여 촉진과 열린 구정 구현을 위하여 군정 소식지의 발행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적극 행정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명칭, 발행인 및 편집인 지정(안 제1조 ~ 제4조)

- 군정 소식지 발행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하여 적극 행정 도모
- 발행인(예천군수) 및 편집인(홍보소통과장) 지정

나. 소식지 게재 사항 규정(안 제5조)

- 국·도·군정 및 지방 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
- 문화, 예술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 예천의 역사, 인물, 관광 등에 관한 사항
- 군민이 참여하는 독자 투고(시, 수필, 칼럼 등) 및 미담 사례,
그 밖에 발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배부 대상 및 배부 방법 규정(안 제6조)

- 배부 대상 : 군민, 기관 및 단체, 출향인 등 그 밖의 관련인 등
- 배부 방법 : 우편 발송, 업체 위탁·직접 배송

라. 명예 기자 위촉 및 운영(안 제7조 ~ 제8조)

- 위촉 방법, 임기, 역할, 해촉 사유 등 주요 활동에 관한 사항

마. 기고, 칼럼 게재 등 주민 참여 및 보상(안 제9조 ~ 제10조)

- 주민 참여 근거 마련 및 명예 기자 회의 참석 수당, 원고료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바. 정책 홍보, 설문, 만족도 조사, 퀴즈, 아이디어 공모, 소식지 활성화 등 행사 근거 마련(안 제11조)

사. 포상 및 개인정보 보호 근거 마련(안 제12조 ~ 제13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nayoonp@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홍보소통과

3) 팩스 : 054-650-606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홍보소통과(전화: 054-650-60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홍보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군정 참여 촉진과 열린 군정 구현을 위한 군정 소식지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예천군 군정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 제호는 “예천별별소식”으로 한다.

제3조(발행) 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집호 및 호외 등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소식지는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군 홈페이지, 모바일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 소식지는 신문형 또는 책자형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신문형의 규격은 전지 8절로 하고 책자형의 규격은 국배판으로 한다. 다만, 실정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편집) ① 소식지 발행을 위하여 편집인을 두고, 편집인은 홍보소통과장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소식지의 편집과 제작, 전문성을 위해 외부기관에 편집을

의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외부 기관에 편집을 의뢰하거나 자문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집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게재사항) ①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정, 도정, 군정 및 지방 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
2. 문화, 예술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예천의 역사, 인물, 관광 등에 관한 사항
4. 군민이 참여하는 독자 투고(시, 수필, 칼럼, 문예작품, 퀴즈 등) 및 미담 사례
5. 그 밖에 발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배부 대상 및 방법)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군민, 기관 및 단체, 출향인 등 그 밖의 관련인 등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른 방법으로 배부할 수 있다.

1.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계시대 : 직접 배부 또는 전문배달업체 위탁
2. 군민, 각급 기관·단체, 출향인 및 그 밖의 관련인 등 : 우편발송

제7조(명예 기자) ① 군수는 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기사의 취재 및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 기사를 둘 수 있다.

② 명예 기자는 공개모집 또는 추천을 통하여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소년에게 자기 계발 및 참여 학습의 장을 마련하여 주기 위하여 관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학생 명예 기사를 선발·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명예 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을 경우
3. 기타 사유로 명예 기사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명예 기사 회의 및 주요 활동) ① 홍보소통과장은 명예 기사 회의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명예 기자의 일반소양과 기사 작성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명예 기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다.

1. 정례회의 및 교육 참석
2. 분기별 1건 이상의 기사 제출
3. 미담 사례 발굴 및 취재
4. 매월 소식지 모니터링 수행

제9조(주민 참여 등) ① 모든 군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편집인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칼럼 등을 게재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원고료 등) ① 명예 기자 회의 참석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 기자, 군민 또는 외부 전문가가 기고(만화, 사진을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하여 소식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일정액의 원고료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명예 기자의 현장 학습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외부 전문가에게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행사의 시행 및 보상) ① 군수는 군민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 및 군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행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계획, 정책 및 브랜드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 등을 홍보·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군정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설문, 만족도 조사, 퀴즈 및 아이디어 공모 등을 실시하는 경우
4. 소식지 발행, 명예 기자 활동, 브랜드 마케팅 등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경우 추첨, 선착순, 선발 등의 방법으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참여자에게 현금, 상품권(모바일 기프티콘 포함),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군수는 소식지를 통해 군정 홍보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예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개인정보 보호) 군수는 소식지 발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행된 군정 소식지는 본 조례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보상 세부기준 (제10조, 제11조)

구 분	제공 대상자 및 결정 방식	1인/1건당 제공 금액 한도	1회 운영당 제공 금액 한도	연간 운영 횟수	비고
설문, 의견 개진, 만족도 조사, 투표	응답자 추천	1만원 이하	30만원 이내	12회 이내	
인터뷰 응답, 퀴즈 또는 게임	응답자 추천	1만원 이하	30만원 이내	12회 이내	
참여 활성화 등 기타 행사 참여	심사 또는 추천	5만원 이하	30만원 이내	12회 이내	
구독자 모집 행사 기념품 제공	응모자 전원 또는 추천	5천원 이하	-	50회 이내	
명예 기자 취재 기사	분기 1건 이상 기사 작성 시	5만원 이하	30만원 이내	12회 이내	
독자 투고 (글, 사진 등)	군민의 원고 등 채택 시	3만원 이하	30만원 이내	12회 이내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예천군 포상 조례】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출향인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